

무엇을 위한 보호였는가?: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의 형성*

천경서†, 신유정‡

1. 서론

1986년 11월 21일,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정상구 의원은 과학기술처(이하 과기처)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이태섭 과기처장관의 독자적 소신인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려는 개발도상국은 없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¹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의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국가와 함께 무단 복제국으로 규정됐고, 당시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보호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었다.² 한편 이태섭 과기처장관은 “미국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5.47.3.431>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됐으며, 2025년 한국과학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제공해주신 이은경 교수님과 유상운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4S1A5A8023873).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박사과정, kscheon@jbnu.ac.kr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과학학과/과학문화연구센터 부교수, ssinyou@jbnu.ac.kr

¹ 대한민국 국회, 『제12대 국회 제131회 경제과학위원회 (1986년 11월 21일)』, 16.

² “Yeutter 미 통상 대표 일행 방한 기간 중 301조 협의 결과(86. 5. 27 - 6. 1)”,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5 1986.6월)』 (외교부 외교

의 압력에 의해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며 정보산업육성을 일환으로 1973년부터 추진해왔다고 답변했다.³

「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1980년대 한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질서 속에서 기술 육성과 보호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의 긴장에 직면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호법」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편이었다. 예를 들어 김인수는 1980년대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보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86년에야 지식재산권 제도를 비로소 인정했다고 분석했다.⁴ 정치외교학자 이지은 역시 「보호법」 제정의 중요한 분기점을 1984-1986년 한·미 통상 협상으로 지적했으며 이때 한국이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 수준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보았다.⁵ 임근영은 한·미 통상 협상을 주도한 한국의 해외협력위원회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국내 산업의 보호보다는 통상 마찰 완화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한·미 통상 협상이 국내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형성 및 시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자료관, 공개번호: 24293, 1986), 21; 당시 미국에 의해 한국과 함께 저작물의 “해적출판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던 대만의 경우, “1984년 7월 미국이 대만의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물만 보호해줄기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압박을 받았던 국가에서 제외됐다. 임혜란,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1985년 301조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20), 34.

³ 대한민국 국회, 앞의 회의록, 19; 실제로 1970년대 초부터 과거지는 “키펀치 용역 수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情報産業 育成法을 제정”, 『매일경제』, 1970. 6. 1, 2면; 서현진, 『처음 쓰는 한국컴퓨터사』 (전자신문사, 1997), 85-89; Heewon Kim, “Vanguard of National Development: Key punch Operators and the Gendered Dimensions of Early Computing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7:2 (2025), 235-263.

⁴ 김인수,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인사이트컴, 2000), 62-63.

⁵ 이지은, “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19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2020), 237-266; 이지은, “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1984-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⁶ 임근영,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적 고찰”, 『창작과 권리』 30 (2003), 142-170; 이외에도 한·미 통상 협상을 1980년대 한국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분기점으로 지적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정상조, “미국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지적소유권법을 중심으로”, 『미국학』 16 (1993), 75-98; 권순국, “한미지적재산권 통상협상의 동적게임이론 분석”, 『산업경제연구』 11:4 (1998), 179-194;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방법에 대한 태도의 변천”, 『법학논총』 14 (2002), 261-282.

물론 한·미 통상 협상이 「보호법」을 비롯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외압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미 통상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같은 기존 법률의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주길 요구했으나, 한국은 「보호법」 제정이라는 별도 입법 형식을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 한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와 관련된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1984년 이른바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 조항을 담은 「정보산업육성법」(이하 「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⁷ 이는 곧 1980년대 초 한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호 및 규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보호법」 제정을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국제 규범의 일방적 수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규범 속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협상의 결과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실 1980년대에 소프트웨어 보호를 둘러싼 국제 규범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 보기 어려웠다. 과학기술사학자 제라도 콘 디아스(Gerardo Con Diaz)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규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⁸ 소프트웨어란 본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된 문서임과 동시에 그 언어를 통해 특정한 기술적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매개체였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의 범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허의 범주로 볼 것인지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미국에서는 1981년 다이아몬드 디어(Diamond v. Diehr) 사건(고무 경화 공정에서 고무의 가열 온도를 계산, 제어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수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유 관행을 일삼았던 컴퓨터 애호가들의 반대로 공존하는 상황이었다.⁹ 1990년대에는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 운동이 대 규모로 전개되기도 했다.¹⁰ 이처럼 1980년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존재론적

7 “정보처리산업육성법(안)”,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법령자문(1)(1984년1월9일-3월24일)(2-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027218, 1984), 238-264.

8 Gerardo Con Diaz, *Software Rights: How Patent Law Transformed Software Development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9 Ibid., 139-158, 161-184.

10 Ibid., 230-257.

· 인식론적 지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 규범은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국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을 “무단 복제국”, “해적 국가”로 낙인찍은 행위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다. 유지니아 린(Eugenia Lean)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기술적 행위를 범죄로 낙인찍은 행위는 복잡한 권력 관계와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치적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린은 20세기 초 영국의 상표권 형성 과정을 분석하며 영국이 자국의 상표권 제도 확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의 모방 행위를 “카피캣(copycat)”으로 규정하고, 이를 “악랄한 범죄”로 묘사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당시 다수의 상표권 침해 소송은 영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린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영국의 상표권 제도 확립에 기여했음을 주장했다.¹¹ 이는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제도 형성 과정에서도 불법으로 낙인찍힌 특정 국가의 행위를 단순히 위법으로 치부하기보다, 그 의미와 역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특히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일부 과학기술학자들이 서구의 컴퓨터 기술을 모방했다고 낙인찍히거나 조명받지 못했던 행위자들의 주체적 활동 및 그 의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학자 홍홍 틴(Honghong Tinn)은 불법 행위자로 간주되곤 했던 대만의 중화상창(中華商場)과 광화상창(光華商場) 기술자들이 단순히 서구 기술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대만의 사회기술적 상황에 맞는 개인용 컴퓨터를 개조, 조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대만 컴퓨터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됐음을 보여주었다.¹² 유상운과 조동원 역시 한국에서 라디오 조립, 복제 등이 이뤄졌던 청계천 전자상가의 기술적 실천과 문화가 한국 반도체 산업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드러냈다.¹³ 특히 조동원은 복제 소굴이라는 오명 속에 가려져 있

¹¹ Eugenia Lean, “Making the Chinese Copycat: Trademarks and Recipes in Early Twentieth-Century Global Science and Capitalism,” *Osiris* 33:1 (2018), 271–293.

¹² Honghong Tinn, “From DIY Computers to Illegal Copies: The Controversy over Tinkering with Microcomputers in Taiwan, 1980–1984,”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33:2 (2011), 75–88; Honghong Tinn, *Island Tinkerer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Making of Taiwan’s Computing Industry* (Cambridge, MA: MIT Press, 2025).

¹³ 유상운·조동원, “무전기에서 라디오로: 전자 기술 문화와 반도체 산업 발단의 착종사”, 『한국과학사학회지』 43:3 (2021), 557–600.

었지만, 청계천 전자상가가 1970년대에 전자오락기 복제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기술 학습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강조했다.¹⁴

하지만 하드웨어 기술에 비해 한국 내 소프트웨어 복제 관행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남영은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관행이 팽배했던 1990년대 한국의 PC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단 복제는 산업 발전의 난관 정도로만 이해했다.¹⁵ 소프트웨어 복제, 개량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980년대는 1990년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사(前史) 정도로 간주되어 왔으며,¹⁶ 1990년대에 대해서도 논의의 초점은 국산 워드프로세서 “한글과 컴퓨터”와 같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일부 성취에만 머물러 있었다.¹⁷ 또한 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 등 한국 정부의 주도로 제도권 행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¹⁸ 이에 비해 저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비제도적 행위자들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복제 및 개량 활동의 기술적·사회적 의미와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초 저변에서 양가적 의미를 지니고, 관행적으로 이뤄졌

¹⁴ 조동원,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IDI 도시연구』 11 (2017), 37-78; 조동원, “디지털문화 초기사 연구: 동아시아 지역행단의 전자오락기·개인용 컴퓨터 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8 (2019), 153-178; Dongwon Jo, “Vernacular Technical Practices Beyond the Imitative/Innovative Boundary: Apple II Cloning in Early-1980s South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6:2 (2022), 157-180; 조동원, “반도체 공장과 게임기 시장 간 협선과 저류: 1970-80년대 디지털 기술 순환의 이종사”, 『과학기술학연구』 23:3 (2023), 106-138.

¹⁵ 남영,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출현: 기술의 공생 발생”, 『한국과학사학회지』 36:3 (2014), 297-327; 남영, “1990년대 한국 PC 게임 산업: PC 게임 개발자들의 도전과 응전”, 『한국과학사학회지』 39:1 (2017), 33-63.

¹⁶ 한경구, “세계화와 한국 사회의 적응과 변화: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2 (1997), 3-52; 윤형섭·오영욱·전홍식, 『한국 게임의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게임의 기적』 (북코리아, 2012).

¹⁷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 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409-430; 진한엠엔비,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II (1980-2000)』 (진한엠엔비, 2012); 오세욱, “소프트웨어 한글의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 ANT와 소프트웨어 연구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한기철·김대용·김명준, 『IT 신화를 이끈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 (통신,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SW의 역사)』 (전자신문사, 201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정보통신』 (진한엠엔비, 2020).

¹⁸ 신향숙, “계승되지 못한 올림픽 ‘장외금메달’: 서울올림픽 전산시스템 개발사”, 『과학기술학연구』 19:2 (2019), 207-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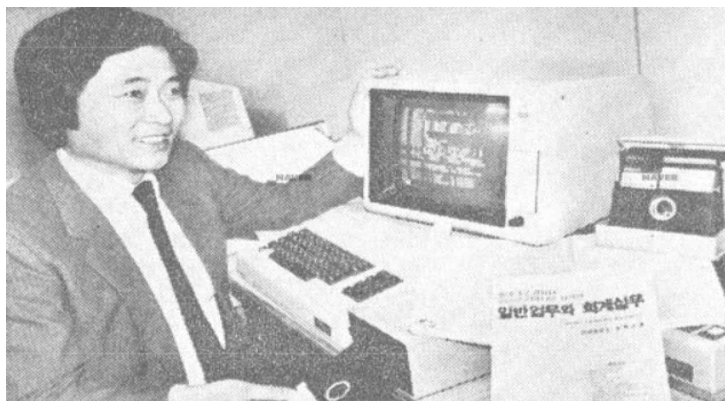
던 소프트웨어 복제 및 개량 활동이 한국 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성찰을 촉발함으로써 「보호법」 형성 및 제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정적으로 낙인찍혀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소프트웨어 복제 활동을 재조명하고, 이것이 한국 소프트웨어 생태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국제 규범의 일방적 수용 결과로 여겨졌던 「보호법」의 역동적 배경 및 형성 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 총 3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1980년대 초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며 관행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 및 개량 행위를 살펴보고, 왜 「육성법」 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가 고안됐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3절에서는 한국 정부가 참여한 1983-198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전문가 회의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혼재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를 목격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4절에서는 1984-1986년 한·미 통상 협상 당시 「보호법」이라는 별도 입법 형식의 고안이 국내 산업 육성을 염두에 둔 한국 정부와 민간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2. 무단 복제 vs 개량 이식: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양가적 의미

1984년에 국내 최초로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1984년 3월 한양데이터센터는 연컴퓨터시티에 400만 원을 지불해 자사에서 사용할 회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고, 연컴퓨터시티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원양행 전산과장 L씨를 통해 제품을 개발해 한양데이터센터에 납품했다. 연컴퓨터시티로부터 납품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한양데이터센터 측은 공인회계사 김명호 씨가 전산회계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일반업무와 회계실무』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양데이터센터는 그 사실을 전산회계출판사에 통보했고, 김명호 씨가 연컴퓨터시티에 대해 무단 복제 및 판매 혐의로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림 1) 참고).¹⁹

¹⁹ “컴퓨터 소프트 複製시비”, 『매일경제』, 1984. 8. 9, 8면; “컴퓨터 무단복제 첫 손해배상소

그림 1. 1984년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소송 사건의 원고 김명호 씨. “소프트웨어複製 첫 法廷 심판”, 『조선일보』, 1985. 3. 13, 6면.



198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복제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그 양상은 국내 기업 또는 개인 간 갈등이거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갈등이었다. 일례로 1983년 S 컴퓨터가 출시한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국내 복제업자들에 의해 시장에 무단으로 유통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²⁰

1984년 김명호 대 연컴퓨터시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국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²¹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이를 “무단 복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개량 이식”으로 인식했다. 당시 개량 이식된 소프트웨어란 “외국 소프트웨어를 수정해(modify)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일컬었다.²²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거나 시판 중인 국내

송”, 『매일경제』, 1984. 8. 21, 8면.

²⁰ “요지경숙 컴퓨터 소프트웨어 <中> —國內업계 동향과 市場背景 문제점”, 『매일경제』, 1984. 6. 2, 7면.

²¹ “첫 SW 무단복제 시비 . . . 당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표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무수한 논의의 본격 시발점”, 경영과컴퓨터 편집부, 『경영과 컴퓨터』 (경컴, 2006. 9), 102.

²² “직접 만져 보는 것이 컴퓨터를 배우는 첩경”, 민컴출판부, 『컴퓨터학습』 (민컴출판부, 1984. 1), 89.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를 개량 이식으로 보았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복제와 구분됐다. 실제로 다양한 문자를 단일 체계로 통합한 유니코드가 보편화되기 전, 로마자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한글 문자 처리가 기술적으로 더 큰 과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²³

하지만 당시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정의 상당수는 코드 수준에서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일부 데이터를 조정하는 수준에서의 수정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모노라는 데이터를 한복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이에 해당했다.²⁴ 이처럼 코드 수준의 수정과 데이터 수준의 수정, 그리고 비숙련자와 숙련자에 의한 수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개량 이식과 무단 복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량 이식, 수입 사용, 자체 개발로 구분하고, 이 범주에 따라 1987년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 중 개량 이식이 57%, 수입 사용이 27%, 자체 개발이 5%라고 집계했다([그림 2(좌)] 참고).²⁵ 같은 시기 『컴퓨터학습』은 개량 이식을 “컨버전(conversion)”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를 카피, 컨버전, 자체 개발로 분류했는데, 이에 따르면 1987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는 카피 50%, 컨버전 28%, 자체 개발 22%로 나타났다([그림 2(우)] 참고).²⁶ 사실 같은 시기임에도 두 통계 간 수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단순 복제와 정당한 복제, 그리고 비정상적 복제를 구분하려 했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부재한 채 혼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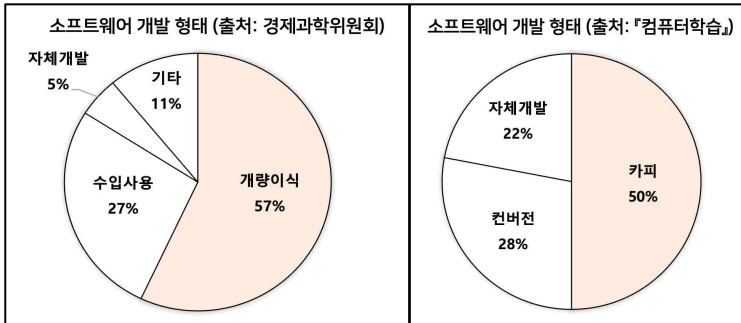
²³ 이러한 유사한 문자 처리 및 변환이 다른 문자권에서도 복제의 틀 안에서 이해됐는지, 혹은 별도의 틀로 이해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회 감사드린다.

²⁴ 해당 예시는 익명의 심사위원이 제시해 준 것으로, 본 논의를 보완하는 데 유익했다. 이에 감사드린다.

²⁵ 대한민국 국회, 『제12대 국회 제137회 경제과학위원회 (1987년 10월 22일)』, 20.

²⁶ “대전환기에 선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 『컴퓨터학습』 (1987. 10), 37.

그림 2. 1987년 10월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별 비율.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회의록과 『컴퓨터학습』 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대한민국 국회, 『제12대 국회 제137회 경제과학위원회 (1987년 10월 22일)』, 20; “대전환기에 선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 『컴퓨터학습』 (1987. 10), 37.



이와 같이 다수를 차지했던 다양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복제 관행은 숙련된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세운상가에 입점해 있던 대다수의 컴퓨터 업체들은 컴퓨터를 구입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에 담아 무료로 복사해주곤 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여러 곳을 드나들며 200여 개의 게임을 수집했다.²⁷ 또 다른 사용자는 사무 관리, 음악 프로그램 등 사용 목적에 맞춰 외국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²⁸ 사실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무단 복제와 개량 이식을 방지하기 위해 카피 프로텍트(copy protect)라는 기술적 장치를 하드 디스크에 포함시키곤 했다. 카피 프로텍트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로 복제해도 실행이 되지 않게 해주었다.²⁹ 하지만 카피 프로텍트를 해지하는 데 주력하는 전문 업체들이 등장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디버거 같은 도구를 이용해 소스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카피 프로텍트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³⁰

²⁷ “특집: 알고 싶은 애플의 세계”, 『컴퓨터학습』 (1985. 7), 17; “독자에게서 온 편지”, 『컴퓨터학습』 (1986. 3), 18; “우리시대 부끄러운 자화상! 대한민국 복돌이의 역사 1부”, 『게임메카』 (2008. 12. 19),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24612&utm> (2025. 10. 31. 접속).

²⁸ “직접 만져 보는 것이 컴퓨터를 배우는 첩경”, 『컴퓨터학습』 (1984. 1), 89.

²⁹ “엘리컴(주) 복사방지 프로그램 시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정보시대, 1984. 8), 157;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프로텍트 가인시스템, 「하드록 디스켓」”, 『컴퓨터학습』 (1987. 5), 47.

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중 잡지였던 『컴퓨터학습』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보면, 소프트웨어 복제가 한편으로는 컴퓨터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여겨졌다. 『컴퓨터학습』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배인동(순천상고 3) 군은 “국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박안기 한국 퍼스널 컴퓨터 이용자 모임 회장은 “한글 처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며 외국 소프트웨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하기가 어렵다고 회고했다.³⁰ 이로 인해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은 세운상가에 드나들거나 유저 그룹을 조직해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최신 외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카피 프로텍트를 풀어 수정을 하거나 갖고 있는 제품을 교환하기도 했다.³² 세운상가에 입점해 있던 대다수의 컴퓨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하인”으로 취급하며 컴퓨터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었다.³³ 『컴퓨터학습』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는 학생 사용자를 위해 소프트웨어 복사 방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³⁴ 또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유저 그룹은 두 잡지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품을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 복사하기 위한 장을 만들었다.³⁵

이처럼 한글용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국내의 상황은 업체 또는 개인이 외국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복제, 개량, 수정 행위를 수행하

30 “특집: 복사방지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컴퓨터학습』 (1985. 5), 13-17; “소프트웨어 복사전쟁”,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6. 3), 55-67; 아이코우 켄지, 박선희 옮김, 『즐거운 리버싱(리버스 엔지니어링 입문)』 (비제이퍼블릭, 2014); 김지아,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적법성 확보방안”, 『저스티스』 158:1 (2017), 161.

31 “각계각층의 60인에게 듣는다: 새롭고 좋은 한글 프로그램을”, 『컴퓨터학습』 (1983. 11), 11; “퍼스컴 소프트웨어의 베스트셀러를 노려라”, 『컴퓨터학습』 (1984. 10), 29; “독자에게서 온 편지”, 『컴퓨터학습』 (1986. 5), 19.

32 “직접 만져 보는 것이 컴퓨터를 배우는 첩경”, 『컴퓨터학습』 (1984. 1), 89; “유저그룹 문화가 싹트고 있다”, 『컴퓨터학습』 (1986. 9), 36;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퍼스널 컴퓨터 구입자들의 이용 실태 조사”, 『컴퓨터학습』 (1984. 7), 31; “지열한 S/W 판매전”, 『컴퓨터학습』 (1986. 1), 20.

33 “특집: 알고 싶은 애플의 세계”, 『컴퓨터학습』 (1985. 7), 17.

34 “Q&A”,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 9), 257-258; “기획특집: 애플 복사(카피)의 모든 것”, 『컴퓨터학습』 (1985. 11), 19-39.

35 『컴퓨터학습』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복덕방”이나 “CS게시판”과 같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 양도, 교환할 수 있는 홍보란을 마련하여 매월호마다 응모를 받았다.

도록 촉진했다.³⁶ 대표적으로 금성 소프트웨어는 미국 팔란티어소프트웨어의 워드프로세서를 한글화한 제품으로 “가나다라”를 출시했다.³⁷ 개인 단위로는 고교 1학년 학생이었던 김영균, 박세희, 여승훈, 이석준, 현민호 군이 조직한 하야로비가 사무용 한글·영문 워드 프로세서인 “WORD MATE II” 개발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³⁸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복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용자들은 때때로 외국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고 유통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의 지변을 확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글 구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를 개량 이식으로 주장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복제는 결국 복제라는 점을 문제 삼는 인식 역시 존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년 4월호를 읽은 한 독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개최한 월간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 출품된 제품이 “일본의 소프트웨어를 90% 이상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공모전에 출품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출시된 제품을 무단 복제한 것이라며 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부에 편지와 전화로 항의했다.³⁹ 종종 소프트웨어 복사 방법을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한 『컴퓨터학습』을 읽은 일부 독자들은 컴퓨터 산업 발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하는 무단 복제 방법을 공개적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⁴⁰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둘러싼 개인 간 분쟁이 한국 내에서 종종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김명호 대 연컴퓨터시티 사건은 국내 소프트웨어 복제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김명호 대 연컴퓨터시티 사건은 혼재되어 있던 개량 이식과 무단 복제의 경계

36 “편집자 노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8), 22; 이경환, 『지적 소유권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1986), 16.

37 “우리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의 현황”,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7. 2), 195.

38 “하야로비”는 컴퓨터 전문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의뢰받았던 소프트웨어 하우스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외국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후 학생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산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하야로비가 대표적이었다. “신기술에 도전하는 무서운 아이들 ‘하야로비’”, 『컴퓨터학습』 (1984. 5), 6-12; 윤형섭·오영옥·전홍식, 『한국 게임의 역사』, 31-51.

39 “소프트웨어와 양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 9), 220-221; “애독자 광장”,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3), 22.

40 “독자에게서 온 편지”, 『컴퓨터학습』 (1985. 12), 19; “독자에게서 온 편지”, 『컴퓨터학습』 (1986. 3), 18.

속에서 정당성 및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이 형성되기 시작한 기점으로도 볼 수 있었다.⁴¹ 김명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었다.⁴² 하지만 1985년 3월 20일 서울민사지법의 재판부는 연 컴퓨터시티가 무단 복제를 했다는 증거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김명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⁴³ 재판부의 판결은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판례가 생길 경우, 향후 선진국과의 저작권 마찰 시에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에 입각한 결과였다는 분석도 있었다.⁴⁴ 사건 결과에 대해 한 컴퓨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⁴⁵ 이처럼 한국 내 소프트웨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로 인정해 개발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사실 1980년부터 한국 정부는 “정보산업종합육성방안”을 마련하며 컴퓨터 관련 기기의 국산화 촉진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전략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⁴⁶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0년 12월 16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전략화를 위한 심포지움”에서 류경희 한 국과학기술정보센터 실장은 소프트웨어 유통을 위해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며 저작권, 판권이라는 법적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형식을 제안했다.⁴⁷ 언론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복제

41 이러한 의미를 짚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42 “소프트웨어複製 첫 法廷 심판”, 『조선일보』, 1985. 3. 13, 6면; “국내 PC역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7. 3), 203.

43 “컴퓨터 소프트웨어「著作権 소송」……“증거 없다”敗訴”, 『조선일보』, 1985. 3. 21, 11면;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패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4), 133-134.

44 “첫 SW 무단복제 시비 ··· 당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표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무수한 논의의 본격 시발점”, 『경영과 컴퓨터』 (2006. 9), 102.

45 “애독자 광장”,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5), 20.

46 “全經聯건의 情報産業육성법 제정토록”, 『매일경제』, 1978. 11. 6, 2면; “情報産業4차산업分類시급”, 『매일경제』, 1980. 10. 21, 3면; 서현진, 『처음 쓰는 한국컴퓨터사』, 150-155.

47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보호 및 유통체제 확립”,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 및 수출전략화를 위한 심포지움:자료 1980.1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12M14284, 1980), 104-105; “科技處 심포지움 개최 소프트웨어開發”, 『매일경제』, 1980. 12. 17, 3면.

해 판매함으로써 업계의 개발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⁸ 이에 1981년 과거치는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라는 새로운 권리를 고안해 이를 적절히 보호, 진흥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정보산업육성법」(이하 「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⁴⁹

여기서 개발권이란 “제19조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발기술에 대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권리”였다. 개발권이 인정될 경우 개발자에게 “개발기술의 독점적 사용이 부여”되므로 개발자가 제3자에게 그 기술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한다면, 개발권을 갖고 있는 개발자의 허가를 받아야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었다. 개발권의 보호 기간은 5년, 필요 시에 5년을 연장해 총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개발권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기구를 통해 조정받거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를 수 있었다.⁵⁰ 이 조항은 유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육성법」에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가 포함된 요인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미흡한 인식, 자체개발 능력의 부재 때문이었다.⁵¹

하지만 1984년 과거치가 제안한 「육성법」은 제정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치가 정보산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던 상공부와 체신부 같은 관계부처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정보산업육성 정책은 상공부 정보기기와, 과거치 정보산업과, 체신부 정보통신과가 분담했다.⁵² 초기의 「육성법」은 하드웨어 산업의 육성시책만을 다

48 “컴퓨터 프로그램도 特許처럼 보호된다”, 『경향신문』, 1983. 7. 13, 7면; “情報처리업체 난립”, 『매일경제』, 1984. 5. 12, 8면; “편집자 노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 12), 18; “복사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컴퓨터학습』 (1985. 5), 14; “애플 복사(카피)의 모든 것”, 『컴퓨터학습』 (1985. 11), 20.

49 “科技處 情報産業育成法제정추진”, 『매일경제』, 1981. 3. 12, 8면; “프로그램 보호법 어디까지 왔다: 한·미 통상협상으로 타결된 지적 소유권 보호”, 『컴퓨터학습』 (1986. 9), 86.

50 “정보처리산업육성법(안)”, 『법령자문(1)(1984년 9월9일-3월24일)(2-2)』 (각주, 7), 238-264; “「科學의달」 맞아 알아본 우리의 현주소 <5> 業種別 기술개발 수준 - 情報産業”, 『매일경제』, 1984. 4. 28, 8면.

51 “성숙된 컴퓨터의 수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4. 1), 15.

52 “情報 산업 官廳部處 一元化 시급”, 『매일경제』, 1984. 10. 11, 8면; “技術開發행정 조정機構 필요”, 『매일경제』, 1986. 7. 5, 3면; 정보산업육성 정책의 관장 부처를 둘러싼 과거치, 상공부, 체신부의 삼원화 문제는 체신부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때도 나타났다. 당시 체신부와 민정당은 컴퓨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르고 있었으나 상공부가 「전자공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드웨어 산업의 육성시책을 포함시키면서 관계부처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과기처는 「정보처리산업육성법」으로 법안의 명칭을 변경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시책을 추가했으나 1985년까지도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법」 입법 논의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학계 및 업계, 개인 컴퓨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관행을 해결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개발 환경 조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동시에 「육성법」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필요했던 학계 및 민간 업계로 구성된 여러 단체의 설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982년 결성된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은 정보산업체 4개사의 발족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업체를 조합원으로 모집해나갔으며, 1983년에는 한국정보산업협회가 창립됐다.⁵⁴ 이 두 단체는 훗날 한·미 통상 협상 시기에 한국 정부가 「보호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핵심 주체였다.

3. 소프트웨어 보호를 둘러싼 혼재된 국제 규범의 양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의를 중심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 세 차례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앞서 1971년 UN은 개발도상국이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IPO에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WIPO는 1978년 「컴퓨터

정보산업 분야를 중복으로 분담하고 있었던 과기처와 상공부를 설득하지 못해 행정전선만 구축에 편중된 법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컴퓨터 관장部處 3元化로 혼란 節次복잡 · 관련統計 작성등 뒷전”, 『매일경제』, 1986. 5. 12, 8면.

53 “情報産業 일관성 있는 育成策 절실”, 『매일경제』, 1985. 4. 2, 6면; 이경환, 『지적 소유권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각주, 36), 30-31.

54 “소프트웨어 組合 이사장 崔昇煥씨”, 『매일경제』 1982. 12. 11, 8면; “情報産業 協會 창립총회 개최”, 『매일경제』, 1983. 5. 26, 1면;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회원사 명단”, 과학기술처 기술진흥국 기술지원과,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059889, 1985), 58-59.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모델 규정」(이하 「모델 규정」)을 마련했다.⁵⁵ 이후 WIPO는 「모델 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 및 제도를 조율하기 위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 관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소프트웨어 보호의 국제 규범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⁵⁶ 이 「모델 규정」은 WIPO 연구팀이 소프트웨어 개념과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이었으며 각국에서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를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⁵⁷

1983년 6월 한국 정부는 4일간 진행된 WIPO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치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상공부 상무관 채재익을 파견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등 총 31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회의록 입수”를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기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⁵⁸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소프트웨어 보호 현황과 그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공유됐다. 예를 들어 1979년 전문가 회의에서는 차기 회의 시에 활용할 소프트웨어 보호의 국제 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획한 바 있다. 이에 1983년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는 기존 국제 조약에 의해 어디까지 보호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A그룹), “부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B그룹),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C그룹)는 응답이 취합됐다.⁵⁹ 대다수의 국가가 제출한 답변은 A그룹, B그룹과 같은 의견이었

55 “Measure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 Repor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IPO, *Expert Group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First Session. Geneva. November 27 to 30, 1979.*, LPCS/I/2 (WIPO Archives, 1979. 9. 30), 1-2.

56 1979년에도 WIPO가 소프트웨어 보호의 국제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나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Draft Report -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LPCS/I/3 (1979. 11. 30), 1; “Report - adopted by the Expert Group,” LPCS/I/4 (1979. 11. 30), 1.

57 WIPO, *Model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Geneva: WIPO Publication, 1978).

58 “Computer Software 보호 조치에 관한 회의 개최 통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198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440816, 1983), 3; “컴퓨터 Software 보호에 관한 회의 보고”, 같은 철기록물, 45; “Provisional List of Participants,” WIP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Second Session. Geneva. June 13 to 17, 1983.*, LPCS/II/INF/1, (1983. 6. 13), 1-8.

59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cerning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으며 이러한 답변은 「베른 협약」, 「파리 협약」, 「세계저작권협약」이라는 현행 국제 조약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했음을 의미했다. 이들 국가는 후속 연구를 통한 신규 조약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⁶⁰ 한국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다양한 법률의 가능성을 검토했던 각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83년 전문가 회의 이후 채재억은 “어느 법률을 적용해 보호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했으며 차기 회의에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도 당국에 제출했다.⁶¹ 1984년 WIPO는 각국마다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특허법」 중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단일한 보호 형식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984년 4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관한 실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 정부는 금성사 특허부장 신관호와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 선임연구원 김채규를 파견했다.⁶² 실무 회의에서 호주의 법무장관 가레스 에반스(Gareth Evans)는 각국의 법이 통일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 「특허법」, 특별법 중 어떤 체제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각국 대표단은 의견 공유에만 머물렀을 뿐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을 국제적으로 단일화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1984년 실무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대표단은 “판례에 근거한 입법”을 제안했다.⁶³ WIPO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1985년 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공동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의 저작권 측면에 관한 전문가

of a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and/or Other Possible Measures in the Field of the protection or Deposit of Computer Software -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LPCS/II/2 (1983. 2. 24), 1-4.

⁶⁰ LPCS/II/2 (1983. 2. 24), 16.

⁶¹ “컴퓨터 Software 보호에 관한 회의 보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1984』 (각주 58), 45-48.

⁶² “컴퓨터 SOFTWARE 전문가 WORKING GROUP 회의 개최”, 같은 철기록물, 59; “WIPO 컴퓨터 Software 전문가 회의”, 같은 철기록물, 64.

⁶³ “Report -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WIPO, *Working Group on Technical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Canberra. April 2 to 6, 1984., LPCS/WGTQ/I/3 (1984. 4. 30), 1-2.

회의”를 개최했다.⁶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의는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39개국이 참석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형식에 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였다.⁶⁵ 한국 정부는 1983년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던 채재익을 포함해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정보기기과장 이희범, 과기처 정보산업과장 유희열을 대표단으로 구성했다.⁶⁶ 이전 회의 때와는 다르게 “「저작권법」에 의한 일률적 보호보다는 산업경제제인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보호 방법의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발언 훈령을 대표단에게 전달했다.⁶⁷

1985년 전문가 회의에서 WIPO · UNESCO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법」보다는 「저작권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 이는 각국에서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을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WIPO · UNESCO가 정리한 각국의 법원 판례인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⁸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부 보호를 채택한 국가들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저작권법」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원고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경우 재판관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⁶⁹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의거해 소

64 “컴퓨터 Software 전문가 회의”, 국제협약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외교부 외교사료관, 공개번호: 25364, 1985), 2-4.

65 1985년 전문가 회의에는 6개의 정부기구, 26개의 비정부기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일본, 요르단,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한국, 소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영국, 미국 39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Report,” UNESCO · WIPO, *Group of Experts on the copyright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Geneva, February 25 to March 1.*, UNESCO/WIPO/GE/CCS/3 (1985. 3. 8), 2.

66 “국제회의 정부 대표 임명”,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25-2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회의의 커다란 진전없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4), 137.

67 “WIPO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회의의 참가에 따른 훈령지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16-19.

68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Case Law - Document submitted by the Secretariats of Unesco and WIPO,” UNESCO/WIPO/GE/CCS/2 (1984. 12. 17), 6-41;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Case Law - Annex B,” UNESCO/WIPO/GE/CCS/3 (1985. 3. 8), 1-5.

69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조치가 무단 복제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⁷⁰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소프트웨어가 공정 내에서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⁷¹ 일부 국가는 소프트웨어란 “전통적인 유형의 저작물 개념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에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⁷² 이때 별도 입법 형식의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국가는 독일과 일본, 브라질, 그리스, 소련뿐이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형식을 채택했고, 개발도상국은 성급하게 입법하기보다는 국제 동향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⁷³

Legislation and Case Law - Annex B,” UNESCO/WIPO/GE/CCS/3 (1985. 3. 8), 2.

⁷⁰ UNESCO/WIPO/GE/CCS/2 (1984. 12. 17), 12-13.

⁷¹ UNESCO/WIPO/GE/CCS/2 (1984. 12. 17), 27-28.

⁷² UNESCO/WIPO/GE/CCS/3, (1985. 3. 8), 4.

⁷³ UNESCO/WIPO/GE/CCS/2 (1984. 12. 17), 6-4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회의의 커다란 진전없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4), 137.

표 1. 1985년 WIPO 전문가 회의 참여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보호 현황.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소프트웨어 보호를 인정해주었던 “조건부 보호”를 채택한 국가는 △로 표기.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Case Law - Document submitted by the Secretariats of Unesco and WIPO”, UNESCO · WIPO, *Group of Experts on the copyright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Geneva, February 25 to March 1, UNESCO/WIPO/GE/CCS/2* (1984. 12. 17), 6-41;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Case Law – Annex B”, UNESCO/WIPO/GE/CCS/3 (1985. 3. 8), 1-5.

	저작권	특허		저작권	특허
호주	○	×	일본	○	△
캐나다	△	×	네덜란드	○	△
프랑스	○	△	필리핀	○	×
독일	△	×	영국	○	△
헝가리	○	△	미국	○	△
인도	판례 無		아르헨티나	○	×
이탈리아	○	×	브라질	×	×
중국	×	○	이스라엘	○	△
덴마크	○	×	노르웨이	○	×
핀란드	판례 無		스페인	○	×
그리스	판례 無		스웨덴	판례 無	×
아일랜드	○	×	소련	×	×

한국 대표단이 작성한, 1985년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가 「저작권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수출 증대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특허법」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물리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작권법」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됐다. 반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있었던 기타 국가는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⁷⁴ 정리하면, 1985년 전문가 회의에서

74 “WIPO 컴퓨터 SOFTWARE 전문가 회의 보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각주 64), 32-33.

도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에 대한 의견과 각국 판례만 수집해 공유하는 등 WIPO · UNESCO는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취재진은 1985년 전문가 회의에 대해 “커다란 진전 없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⁷⁵ 이처럼 1985년까지도 각국에서 소프트웨어 보호 형식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특허법」에 의한 보호, 독자적인 보호 제도의 구축으로 삼원화된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이 수차례에 걸친 WIPO 국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형식 및 보호 범위에 관한 문제는 한국만의 현안이 아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WIPO 국제 회의에 파견된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가 여러 형식으로 혼재되어 있었던 국제 사회의 상황을 목격했다. 다시 말해, 1985년까지 국제적으로 단일 형식의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혼재된 국제 규범 상황을 인식한 채 한국 정부는 1984-1986년 한 · 미 통상 협상을 맞이했다.

4. 1984-1986년 한 · 미 통상 협상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성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한 · 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미국이 자국 업체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한 이후로 1983년 한 · 미 저작권 관계 실무 협의가 이뤄졌다. 그 이후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한 · 미 통상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⁷⁶ 한 · 미 통상 협상은 미국이 담배와 같은 일반 상품 및 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양국간 무역 마찰이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 의제에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됐다.⁷⁷ 특히 한 · 미 통상 협상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인 IBM이 국내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IBM 소프트웨어 바이오스(BIOS) 무단 복제를 문제 삼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론하자,⁷⁸ 소프트웨

75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회의 커다란 진전없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5. 4), 137.

76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협의의제(안)”, 외무부 경제국 통상정책과,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차. Washington, D.C., 1982.3.2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335808, 1981), 47-73; 이 지은, “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각주 5), 248-249.

77 임혜란,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33-34; 외무부 경제국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1 84.1-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439933), 1-160.

78 “컴퓨터業界에「IBM恐怖」”, 『동아일보』, 1985. 5. 2, 2면; “多國籍 恐龍「IBM進軍」의 波長

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다자간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⁷⁹

1983년 미국무역대표부(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한·미 저작권 관계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소프트웨어 보호 조항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법」 소관 부처였던 문화공보부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각국의 국내법은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실무 협의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했다.⁸⁰ 문화공보부의 지적은 WIPO 국제 회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도 했다. 과거처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내 정보산업 정책을 분담하고 있었던 상공부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입법에 반대했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고, 한국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요구한 「저작권법」 개정 대신 별도의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별도 입법안의 근거는 1984년 「육성법」 제정 논의로부터 결성된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이 진행한 1985년 “소프트웨어 개발권의 보호” 연구로부터 마련됐다. 이 연구에는 중앙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경환 교수를 비롯해 과거처 관계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송상현 교수 등 총 7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⁸²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에 의해 창작되는 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여러 사람이 설계와 실행 단계를 거쳐 개발”되는 것

컴퓨터業界「生死의벼랑」, 『동아일보』, 1985. 5. 3, 5면; “IBM컴퓨터 進出경위 조사”, 『동아일보』, 1985. 5. 27, 2면.

⁷⁹ 이경환, 『지적 소유권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각주 36), 29.

⁸⁰ “한·미 저작권 관계회의”, 외무부 경제국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1 84.1-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439933, 1984), 71.

⁸¹ “저작권 관계 의견 회신”, 같은 철기록물, 90; “지적소유권관계 대외경제전략회의(제1차) 결과”, 같은 철기록물, 104-110; “저작권관계 제3차 대외경제전략회의의 결과”, 외무부 경제국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2 84.10-1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439934, 1984), 80-83.

⁸² “USW-5305(301조 협의)의 PART 2”,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 (외교부 외교사료관 공개번호: 24289, 1985), 38-39; “소프트웨어조합 SW법의 보호 연구”, 『매일경제』, 1985. 10. 28, 6면; “6개課題 공동연구 SW조합,내년실시”, 『매일경제』, 1985. 12. 4, 6면; “체신부·SW産業 生産性향상 추진”, 『매일경제』, 1985. 12. 5, 6면; 이경환, 『지적 소유권의 세계 동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1-72.

이기에 통상적인 저작 인격권을 소프트웨어 개발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변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은 「저작권법」 보다는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⁸³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은 1985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월 15일까지 국내 정보산업 관련 업체 140개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92개사(66%)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116개사(83%)가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가 실시된다면 “개발 의욕이 고취된다”고 응답했다.⁸⁴ 단,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축적의 기간도 부여해야 하므로 신축성을 부여한 “단계적 보호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⁸⁵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형식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⁸⁶ 그 근거로는 1974년 12월 19일 미국에서 설립된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신기술의 사용을 다루기 위한 국가위원회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의 보고서를 인용했다.⁸⁷ 당시 CONTU 위원들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데 “특히가 더 적합”한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⁸⁸ 한국 정부가 자국 실정에 맞는 별도 입법을 결정한 이유는 CONTU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보호 범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⁸⁹ 이러한 국내외 연구 결과에 의거해

⁸³ 이경환, 같은 보고서, 21-22.

⁸⁴ 같은 보고서, 33-37.

⁸⁵ 같은 보고서, 40-41.

⁸⁶ “한·미 저작권 관계 실무 회의록”,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2 84.10-12)』 (각주, 81), 151-152.

⁸⁷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신기술의 사용을 다루기 위한 국가위원회”라는 번역어는 이두갑·칼라 헤세·제라도 콘 디아스·크리스토퍼 켈티, 김인·양승호·장준오 옮김, 『아는 것이 돈이다: 지식재산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아름, 2022), 189에서 가져왔다.

⁸⁸ Gerardo Con Diaz, *Software Rights*, 122-138.

⁸⁹ “S/W 보호관련자료”, 외무부 경제국 통상정책과,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한국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보호법」)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⁹⁰

미국무역대표부는 「저작권법」과 같은 수준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한다면, 별도 입법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⁹¹ 하지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국무역대표부와 이견 차이가 발생했다. 먼저 보호 기간의 설정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제안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명시된 “50년 동안의 보호 기간은 불필요”하게 길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특허 출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규제에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⁹² 이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30년이라는 보호 기간은 소프트웨어의 “짧은 수명”과 주기적인 “코드 수정의 가능성”을 고려한 설정이었다.⁹³

표 2. 한·미 통상 협상에서 「보호법」에 삽입할 소프트웨어 보호 내용에 관한 양측 입장. 표의 내용은 의무부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프로그램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한·미 통상협상으로 타결된 지적 소유권 보호”, 『컴퓨터학습』 (1986. 9), 88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구분	미국무역대표부(USTR)	한국 정부
입법 방식	단일 입법	별도 입법
보호 기간	50년	30년
특별 조항	삭제	포함
소급 보호	적용	조건부 적용
소급 보호 방식	법적 처벌	행정지도

1984.11.29-30. 전3권 (V.3 회의자료)』(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1439935, 1984), 51-52; Gerardo Con Diaz, *ibid.*, 230-257.

⁹⁰ “현안301조협상대책”,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각주, 82), 23.

⁹¹ “USW-5305의 PART 2”, 같은 철기목록, 39.

⁹² “저작권관계 제3차 대외경제전략회의 자료”,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V.3 회의자료)』(각주, 89), 6; “프로그램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한·미 통상협상으로 타결된 지적 소유권 보호”, 『컴퓨터학습』 (1986. 9), 88.

⁹³ “지적소유권 관련법안 미측검토의견에 대한 아축입장 송부”,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4 1986.4-5월)』(외교부 외교사료관, 공개번호: 24292, 1986), 123.

또한, 한국이 제안한 「보호법」에는 “정부는 프로그램의 품질 보증·기술 향상 및 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33조(육성시책)가 포함됐다.⁹⁴ 미국무역대표부는 이 조항이 불필요하기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민간산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므로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⁹⁵ 실제로 1986년 4월 15일 과기처가 개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조항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그림 3] 참고). 이 공청회에는 과기처 기술정책실장 최영환, 한국데이터통신 사장 이용태,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소장 성기수와 컴퓨터 관련 민간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컴퓨터 업계 대표들은 “법안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청회 이후 한국정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⁹⁶ 미국무역대표부는 제33조(육성시책)와 같이 특별 조항 내용에 속했던 제17조(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제18조(프로그램의 유통촉진)의 삭제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⁹⁷ 제17조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절차를 거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었고, 제18조는 유통 중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⁹⁸

9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3920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95 “301조 협상”,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6 1986.7월1일-7월20일)』 (외교부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24294, 1986), 89; “301조 협의(법안에 대한 합의내용)”, 같은 철기록물, 347-348.

96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공청회 열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6. 5), 214; “소프트웨어 보호법 시행발표로 알아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6. 10), 193; “[과학기술이 미래다] <11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첫 제정”, 『전자신문』, 2024. 2. 14, <https://www.etnews.com/20240214000179> (2025. 10. 21. 접속).

97 “301조 최종협의 결과보고”,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8 1986.8-10월)』, (외교부 외교사료관 공개번호: 24296, 1986), 21.

9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3920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그림 3. 1986년 4월 15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안) 공청회 현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공청회 열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86. 5), 214.



미국무역대표부와 이견을 보인 또 다른 의제로는 소급 보호(소급효)의 인정 여부였다. 소급 보호란 「보호법」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처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⁹⁹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소관이었고, 소급 보호를 인정할 경우 “국내의 저항이 커질 것”임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¹⁰⁰ 소급 보호의 불수용은 국제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반대해 온 국내 민간산업을 설득하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었다.¹⁰¹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소급 보호의 수용이 부적합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 쿠시먼 다비 앤 쿠시먼(Cushman, Darby & Cushman)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저작권법」과 「음반법」에도 저작권의 소급 보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¹⁰² 대만에서도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는 것이므로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¹⁰³ 현행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생

99 “301조 협의방침”,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2 1986.2월)』 (외교부 외교자료관 공개번호: 24290, 1986), 58; “86 EMF 세계 경제지도자 회의 참가보고(2)”, 같은 철기록물, 60.

100 “대미 301조 협의 대책”, 같은 철기록물, 101-102.

101 “지적소유권 관련 자료(소급효 Talking Point)”, 같은 철기록물, 23-24.

102 “301조 협의”,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1 1985.11월~1986.1월)』 (각주, 82), 208.

산된 저작물을 불법 복제물로 수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¹⁰⁴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와의 의견 조정 끝에 인쇄물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소급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소급 보호는 책이나 프로그램 매뉴얼에 소스 코드로 작성된 인쇄물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발행, 배포하는 행위를 “행정지도를 통해 방지”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행정지도는 법적 보호에 준하지 않았다.¹⁰⁵ 이는 소프트웨어의 개량 이식을 관행으로 삼고 있었던 국내 업계 및 사용자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1986년 7월 21일 주미대사 김정원과 USTR 통상대표 클레이튼 유티(Clayton Yeutter)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외국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국산 소프트웨어도 국제적인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¹⁰⁶ 「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인이 창작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1987년 7월 한국이 가입한 「세계 저작권 협약」에 따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 저작권 협약」에 의거해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한다는 의미였다.¹⁰⁷ 결과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보호법」 제정이 확정됐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다.¹⁰⁸

하지만 「보호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87년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와 이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법」 제정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1988년 형제컴퓨터와 임마누엘전자가 한국팔란티어소프

¹⁰³ “지적 소유권 보호”,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2 1986.2월)』 (각주 99), 164.

¹⁰⁴ “301조 협의”, 같은 철기록물, 136.

¹⁰⁵ “USW-3386(301조 협의)의 계속”,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6 1986.7월1일-7월20일)』 (각주 95), 166-167; “Draft Letter”, 같은 철기록물, 256-266; “한·미 301조 협의 타결 출장보고서 (’86. 7. 15 - 22)”, 통상정책과,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7 1986.7월21일-7월31일)』 (외교부 외교 사료관 공개번호: 24295, 1986), 168-175.

¹⁰⁶ “미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 교섭결과 보고”,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V.7 1986.7월21일-7월31일)』, 178-185.

¹⁰⁷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코리아헤럴드, 1987), 410-414.

¹⁰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3920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트웨어의 “팔란티어 워드프로세서(PWP)”를 무단 복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국내 최초로 각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¹⁰⁹ 1992년 4월 정보산업연합회(전 한국정보산업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보호법」을 근거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이 진행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1992년 3월까지 16건이 있었다.¹¹⁰ 그러나 동시에 「보호법」의 시행, 특히 「보호법」에 포함된 제33조(육성시책)의 적용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 노력으로 이어졌다. 「보호법」 시행 직후 한국정보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등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의 수립”, “채무보증·진흥기금·조세감면” 등의 정책 마련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¹¹¹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한국 정부는 1987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제정,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¹¹² 이러한 대목은 「보호법」 제정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 이중적인 성격을 띤 법안이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보호법」은 그간 1980년대 한·미 통상 협상과 함께 한국이 소프트웨어 보호에

¹⁰⁹ “소프트웨어 불법複製 告訴”, 『매일경제』, 1988. 5. 7, 15면; “「PWP」改作性 인정 科技處, 보호법 적용”, 『동아일보』, 1988. 6. 23, 12면; “PWP불법 複製 첫유죄 인정 프로그램 法廷서 비…그후”, 『매일경제』, 1988. 11. 7, 8면;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에 60萬원 벌금형”, 『동아일보』, 1988. 11. 28, 11면.

¹¹⁰ 당시 이러한 소송은 벌금형 선고나 사과문 게재, 무단 복제품 전량 회수 등을 조건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 불법복제 현실 진단”,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2. 6), 237.

¹¹¹ “프로그램保護法 補充論 제기”, 『매일경제』, 1986. 11. 20, 7면; “育成法에 삽입토록”, 『매일경제』, 1987. 6. 9, 7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대한 건의”,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제정』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81157, 1987), 2-13; 대한민국 국회, 『제12대 국회 제137회 경제과학위원회 (1987년 10월 22일)』, 15; 경제과학위원회,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의안정보시스템, 1987. 10), 7.

¹¹²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법률 제3984호), 1987. 12. 4 제정, 1988.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안) 검토”,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국유재산 무상사용 공공단체지정 관련자료』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81159, 1988), 96.

대한 국제 규범을 수용한 결과로 이해됐다. 하지만 1980년대 소프트웨어 보호를 둘러싼 국제 규범은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상태였고, 한국 역시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규범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복제 관행이 한국에서도 낯선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무단 복제 관련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무단 복제로 이해되기보다는 기술 개량과 관행적 복제 사이에서 양가적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한국 내 컴퓨터 사용자들은 한글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준의 수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복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입은 업체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권”과 같은 나름의 보호 장치를 구상했는데, 이는 자체 개발의 촉진을 통해 정보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물론 한·미 통상 협상은 한국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권 보호 조항을 담은 「육성법」 제정이 무산된 뒤,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들은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를 다시금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미국이 설정한 국제 규범의 일방적 수용으로만 해석한다면 입법 방식, 특별 조항 삽입, 보호 기간 설정, 소급 보호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타난 이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압력이나 제도적 요인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그 배경에 놓인 기술적 조건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특수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과학기술의 물질적·사회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왜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지 잘 보여준다. 또한 당시 한국 소프트웨어 보호 제도의 형성에 미국만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1983년부터 WIPO 국제 회의에 참석하며 여러 국가의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을 인식하고 있었다.

흔히 「보호법」은 과학기술 규제 제도의 일환으로 이해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은 「보호법」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규제와 육성 제도는 대립항도 아니거니와 상호배타적이지 않지만, 과학기술 법제도 맥락에서 육성이라고 하면 대체로 명시적인 진흥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경희 외는 『과학기술혁신과 법』에서 과학기술진흥·육성에 관한 법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보건의료기술진

흥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¹¹³ 여기에 「보호법」과 같은 제도는 같이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보호법」은 1980년대 한국이 혼재된 개념과 실천 속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진흥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였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규제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넘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기술 제도 시스템의 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듯, 불법, 복제, 보호, 규제와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투고: 2025년 11월 27일, 심사 완료: 2025년 12월 29일, 게재 확정: 2025년 12월 31일)

¹¹³ 이경희 외, 『과학기술혁신과 법: 현행 과학기술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1).

Protection for Wha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1986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between Regulation and Promotion

CHEON Kyung-Seo and SHIN Youju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 began to legally protect software with the enactment of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on July 1, 1987. Previous literatures have often interpreted Korea's software protection regime as a direct outcome of the U.S.-Korea Trade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early 1980s, domestic computer users had understood software reproduction in an ambivalent sense, referring both to "modifying software" and "unauthorized reproduction".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ed legislation such as the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included "the right of developing software" as a way to regulate reproduction practices. At the same time,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Korean government witnessed that many countries were also struggling to establish consistent legal frameworks for software protection. Against this backdrop, during the U.S.-Korea Trade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a conflicting 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regarding the form of legislation, the inclusion of special provisions, and whether retroactive protection should be applied. Therefore,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at, in South Korea's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was shaped as a product of these negotiations, emerging from the government's simultaneous concern with both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Keywords: software, copy, reproduction, regulation, industry promo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U.S.-Korea trade negotiations,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